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574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C에게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54.92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2. 1.부터 위 가.항의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,7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균부

별지